

제2장 상품 무역

제1절 정의

제2.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영사거래란 상업 송장, 원산지 증명서, 적하목록, 선적자 수출신고서, 또는 수입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그 밖의 모든 통관서류를 위한 영사 송장 또는 영사 비자를 취득할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될 한쪽 당사국의 상품이 수출 당사국 영역에 있는 수입 당사국 영사의 감독을 위하여 먼저 제출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말한다.

무관세란 관세가 없음을 말한다. 그리고

수입허가절차란 수입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하기 위한 사전조건으로서 신청서 또는 그 밖의 서류(통관 목적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것 외의 것을 말한다)를 관련 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정적 절차를 말한다.

제2절 적용범위

제2.2조 적용범위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양 당사국 간 상품 무역에 적용된다

제3절

내국 과세 및 규정에 대한 내국민 대우

제2.3조

내국 과세 및 규정에 대한 내국민 대우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3조 및 그 주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3조의 규정과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된다.

제4절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제2.4조

관세 인하 또는 철폐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부속서 2-가의 자국 양허표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거나 철폐한다.
2.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한 기존의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관세를 채택할 수 없다.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WTO 협정에 따라, 원산지 상품에 대한 한쪽 당사국의 최혜국 실행 관세율이 부속서 2-가의 그 당사국의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율보다 낮

은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은 수입 시 그 최혜국 실행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수입자가 수입 시 더 낮은 관세율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그 수입자가 상품에 대하여 지불한 관세 초과분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4. 제4.5조(투명성)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자국의 최혜국 실행관세율의 모든 개정과 제1항에 따라 적용되는 최신 관세를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적용일 이내에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제2.5조

관세 양허의 가속화

1.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들이 부속서 2-가의 자국의 관세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 양허를 가속화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제19.3조(개정)에 따라 이 협정을 개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2. 당사국은 언제든지 부속서 2-가의 자국 양허표에 규정된 자국의 관세 양허를 일방적으로 개선하거나 가속화할 수 있다. 자국 관세 양허의 그러한 모든 개선 또는 가속화는 다른 쪽 당사국에 확대된다. 그러한 당사국은 새로운 특혜 관세율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실행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다른 쪽 당사국에 알린다.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2항에 언급된 당사국의 관세 양허의 일방적인 개선 또는 가속화 후, 그 당사국은 해당 연도에 대하여 부속서 2-가의 자국 양허표에 규정된 특혜 관세율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 자국의 특혜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 그러한 당사국은 새로운 특혜 관세율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그러한 날 전, 실행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다른 쪽 당사국에 알린다.

제2.6조

상품 분류

양 당사국 간 무역에서의 상품의 분류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합치한다.

제2.7조

관세평가

양 당사국 간 교역되는 상품의 관세가격을 결정하는 목적상, 1994년도 GATT 제7조의 규정과 관세평가협정 제1부의 규정 및 부속서 1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제4절

특별 제도

제2.8조

상품의 일시 반입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규정된 대로, 상품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자국의 관세 영역으로 반입되고, 명시된 기간 내에 재수출될 의도가 있으며, 그 상품의 사용으로 인한 통상적인 감가상각 및 손실을 제외한 어떠한 변화도 거치지 않은 경우, 그러한 상품이 수입관세 및 조세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조건부로 면제받고 자국의 관세 영역으로 반입되는 것을 허용한다.

2. 각 당사국은, 관계인의 요청이 있고 자국의 관세 당국이 타당하다고 여기는 사유가 있는 경우, 처음에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여 제1항에 규정된 무관세 일시 반입의 기한을 연장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제1항에 규정된 상품의 무관세 일시 반입에 대하여 다음을 요구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가. 그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이나 거주자에 의해서만 또는 그 개인적인 감독하에서만 그 인의 영업활동, 거래, 직업 또는 스포츠를 수행하

는 데 사용될 것

- 나. 그 상품이 자국 영역에 있을 동안 판매되거나 임대되지 않을 것
- 다. 그 상품이 다른 경우라면 반입 또는 최종 수입 시에 부담하게 될 관세, 조세, 수수료 및 부과금을 초과하지 않는 액수로서 그 상품의 수출 시에 반환될 수 있는 담보 또는 보증을 수반할 것
- 라. 그 상품이 수입 및 수출될 때 식별이 가능할 것
- 마. 그 상품이 가호에 언급된 인의 출국 시 또는 그 당사국이 설정할 수 있는 일시 반입의 목적에 관련된 그 밖의 기간 내에 수출될 것. 다만, 연장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바. 그 상품이 의도된 사용을 위한 합리적인 수량을 초과하지 않게 반입될 것, 그리고
- 사. 그 상품이 그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그 당사국의 영역으로 달리 반입 가능할 것

4. 당사국이 제3항에 따라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상품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부담하게 될 관세 및 그 밖의 부과금에 자국의 법과 규정에 규정된 그 밖의 부과금 또는 벌금을 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일시 반입되었던 상품이 반입되었던 통관 항구 외의 다른 통관 항구를 통하여 재수출되도록 허용한다.

제2.9조

컨테이너 및 팔레트의 일시 반입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 또는 자국이 당사자인 관련 국제 협약의 규정에 규정된

대로, 국제 운송에서 상품의 선적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컨테이너와 팔레트에 대하여 그 원산지와 관계없이 무관세 일시 반입을 허용한다.

가. 이 항의 목적상, “컨테이너”란 운송기기(리프트반, 가반탱크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구조물)의 품목을 말한다.

- 1) 상품을 보관하기 위한 격실을 형성하도록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
- 2) 항구적 성질을 가지고, 따라서 반복 사용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견고한 것
- 3) 도중에 재적재하지 않고,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에 의하여 상품의 수송을 원활하게 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것
- 4) 특히 하나의 운송수단에서 다른 운송수단으로 옮길 때 용이하게 취급되도록 설계된 것
- 5) 적출입(積出入)이 용이하도록 설계된 것, 그리고
- 6) 1m³ 이상의 내부 용적을 가지고 있는 것

컨테이너는 그 컨테이너의 해당 유형에 적합한 부속품 및 기기를 포함한다. 다만, 그러한 부속품 및 기기는 그 컨테이너와 함께 운송되어야 한다. 컨테이너라는 용어는 차량, 차량의 부속품이나 예비부품, 또는 포장이나 팔레트는 포함하지 않는다. 착탈식 본체는 컨테이너로 간주한다.

나. 이 항의 목적상, “팔레트”란 기계식 장치의 도움으로 단위 화물을 운송하거나 취급 또는 적재할 목적으로 다량의 상품이 단위 화물을 형성하도록 조립될 수 있는 데크 위의 장치를 말한다. 이 장치는 받침대로 분리된 두 개의 데크 또는 발이 지탱하는 단일 데크로 구성된다. 그 전체 높이는 포크리프트 트럭 또는 팔레트 트럭에 의한 취급과 호환 가능한 최소 높

이로 줄어든다. 또한 이 장치는 상부 구조를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제2.10조

상업적 가치가 없는 견본품의 무관세 반입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업적 가치가 없는 견본품에 대하여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그 원산지에 관계없이 무관세 반입을 허용한다.

제6절

비관세조치

제2.11조

비관세조치의 적용

1. 당사국은 WTO 협정 또는 이 협정상 자국의 권리 및 의무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상품의 수출에 대하여 어떠한 비관세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2. 각 당사국은 제1항에서 허용된 자국의 비관세조치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어떠한 그러한 조치도 양 당사국 간의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기 위하여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도록 준비, 채택 또는 적용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제2.12조

수량 제한의 일반적 철폐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1994년도 GATT 제11조와 그 주해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 또는 다른 쪽 당

사국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상품의 수출에 대하여, 쿼터, 수입 및 수출 허가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시행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 외의 어떠한 금지 또는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11조와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된다.

2. 당사국이 1994년도 GATT 제11조제2항가호에 따라 수출 금지 또는 제한을 채택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요청에 따라,

가. 그러한 금지 또는 제한과 그 이유를 그 금지 또는 제한의 성격 및 예상되는 기간과 함께 다른 쪽 당사국에 알리거나, 그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공표한다. 그리고

나. 충분한 사전 협의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제2.13조

국제수지 보호조치

1. 당사국이 심각한 국제수지 및 대외적 금융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및 국제수지 규정에 관한 양해에 따라 제한적인 수입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한쪽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모든 제한 또는 그에 대한 변경은 다른 쪽 당사국에 신속하게 통보된다.

제2.14조

수입허가

1. 각 당사국은 모든 자동 및 비자동 수입허가절차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이행되고, 수입허가협정에 따라 적용되도록 보장한다. 어떠한 당사국도 수입허가협정에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2. 이 협정의 발효 후 신속하게, 각 당사국은 기존의 모든 수입허가절차를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한다. 그 통보는 수입허가협정 제5조제2항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한다.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이 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당사국이 수입허가협정 제4조에 규정된 WTO 수입허가위원회에 그 협정 제5조제2항에 명시된 정보와 함께 그 절차를 통보한 경우, 그리고

나. 당사국이, 수입허가협정 제7조제3항에 기술된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연례 질의서에 대한 응답으로 그 당사국에 대한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WTO 수입허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가장 최근의 연례 답변에서, 그 절차에 대하여 그 질의서에 요청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3. 당사국은 모든 새로운 수입허가절차 및 자국의 기존의 수입허가절차에 대하여 자국이 행하는 모든 수정을 가능한 범위에서 그 새로운 절차 또는 수정이 발효되기 30일 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한다. 당사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국의 공표일 후 60일을 경과하여 통보하지 않는다. 이 항에 규정된 통보는 수입허가협정 제5조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한다. 당사국이 새로운 수입허가절차 또는 기존의 수입허가절차의 수정에 대하여 수입허가협정 제5조제1항부터 제5조제3항까지에 따라 WTO 수입허가위원회에 통보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이 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4. 모든 새로운 또는 수정된 수입허가절차를 적용하기 전에, 당사국은 그 새로운 절차 또는 수정을 정부의 공식적인 인터넷 사이트에 공표한다. 가능한 범위에서, 그 당사국은 그 새로운 절차 또는 수정이 발효하기 최소 21일 전에 그렇게 한다.

5.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보는 그 수입허가절차가 이 협정에 합치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6. 제3항에 따른 통보는 그 통보의 대상인 모든 절차에 따라 다음을 명시한다.

가. 어떠한 생산품에 대한 수입허가 조건이 그 생산품의 허용 가능한 최종 이용자를 제한하는지 여부, 또는

나. 당사국이 어떠한 생산품의 수입허가 취득 자격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부과하는지 여부

- 1) 산업협회의 회원자격
- 2) 수입허가 요청에 대한 산업협회의 승인
- 3) 그 생산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생산품의 수입이력
- 4) 수입자 또는 최종 이용자의 최소 생산능력
- 5) 수입자 또는 최종 이용자의 최소 등기자본금, 또는
- 6) 수입자와 그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유통업자 간 계약 또는 그 밖의 관계

7. 당사국은 수입허가의 부여 또는 거부 시 자국의 허가 당국에 의하여 이용되는 기준에 관한 다른 쪽 당사국의 모든 합리적인 질의에 대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60일 내에 답변한다. 수입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및 무역업자들이 수입허가의 부여 또는 할당의 근거를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공표한다.

8. 수입허가를 위한 어떠한 신청서도 그 신청서에 포함된 기본 정보를 변경시키지 않는 사소한 서류상의 오류로 거절되지 않는다. 사소한 서류상의 오류는 여백의 넓이 또는 사용된 글꼴과 같은 형식 오류, 그리고 명백하게 거짓 의도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철자 오류를 포함할 수 있다.

9.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한 수입허가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그리고 그 요청을 받은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신청인에게 거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제2.15조

수입 및 수출과 관련된 수수료 및 형식

1.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입이나 수출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성격 여하를 불문한 모든 수수료 및 부과금(수입 또는 수출 관세, 1994년도 GATT 제3조제2항에 합치되게 적용되는 내국세 또는 그 밖의 내국 부과금에 상당하는 부과금, 그리고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외의 것을 말한다)이 제공된 서비스의 대략적 비용으로 금액이 한정되도록, 그리고 이것이 국내 상품에 대한 간접적인 보호나 재정적 목적을 위한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한 과세가 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자국이 부과하는 수수료 및 부과금의 세부사항을 신속하게 공표하고 그러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관련 수수료 및 부과금을 포함한 영사거래를 요구하지 않는다. 어떠한 당사국도 수입 당사국의 해외 대리인 또는 수입 당사국을 대신하여 행동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인이나 기관이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통관서류를 보증, 인증하거나 달리 열람하거나 승인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관련 수수료 또는 부과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2.16조

비관세조치에 대한 기술 협의

1. 한쪽 당사국은 자국의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여기는 조치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기술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그 조치 및 그 조치가 기술 협의를 요청하는 당사국과 피요청당사국 간의 무역에 어떻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우려사항을 분명하게 적시한다.
2. 그 조치가 다른 장의 적용을 받는 경우, 요청당사국과 피요청당사국 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장별 협의 메커니즘이 사용된다.
3. 제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피요청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않

는 한, 요청 후 180일 내에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제1항에 언급된 서면 요청의 접수일 후 60일 내에 응답하고 기술 협의를 개시한다. 기술 협의는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한 수단을 통하여 수행될 수 있다.

4. 요청당사국은 긴급한 사안이라고 여기는 경우, 제3항에 규정된 것보다 짧은 기간 내에 기술 협의회가 개최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5. 이 조에 따른 기술 협의는 제17장(분쟁해결)과 WTO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절차와 관련된 권리 및 의무와 무관하다.

제7절 제도 규정

제2.17조 상품소위원회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상품소위원회를 설치한다.

2. 상품소위원회는 당사국 또는 공동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 장, 제3장(원산지 규정), 제4장(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제5장(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6장(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및 제7장(무역구제)에서 발생하는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상호 합의된 시간, 장소 및 방법에 따라 회합한다.

3. 상품소위원회의 기능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장, 제3장(원산지 규정), 제4장(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제5장(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6장(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및 제7장(무역구제)의 이행을 검토하고 점검하는 것

나. 필요한 경우 이 장, 제3장(원산지 규정), 제4장(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

화), 제5장(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6장(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및 제7장(무역구제)의 이행 및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제출하는 것

다. 필요한 경우 이 장, 제3장(원산지 규정), 제4장(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제5장(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6장(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및 제7장(무역구제)에 대한 모든 개정사항을 검토하고 양 당사국에 권고하는 것

라. 합의에 따라 이 장, 제3장(원산지 규정), 제4장(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제5장(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6장(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및 제7장(무역구제)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을 논의하고 그 밖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

제2.18조

관세 양허표의 전환

각 당사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주기적 수정 후 개정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품목분류체계에서 부속서 2-가를 이행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부속서 2-가의 자국 양허표 전환이 부속서 2-가에 규정된 관세 양허를 손상시키지 않고 수행되도록 보장한다.

부속서 2-가
관세 양허표

1. 이 부속서의 당사국 양허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단계별 양허 유형은 제2.4조에 따른 각 당사국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에 적용된다.

- 가. 양허표에 단계별 양허유형 “A”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그 품목에 대하여 완전히 철폐되며, 이 협정의 발효일에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나. 양허표에 단계별 양허유형 “B”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그 품목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다. 양허표에 단계별 양허유형 “C”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그 품목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0년차 1월 1일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라. 양허표에 단계별 양허유형 “D”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그 품목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5년차 1월 1일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마. 단계별 양허유형 “SL”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그 품목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50퍼센트를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인하하여, 이행 10년차 1월 1일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기준세율의 50퍼센트로 유지된다.
- 바. 양허표에 단계별 양허유형 “E”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그 품목에 대하여 기준세율이 유지된다.

2. 이 부속서의 당사국 양허표에 규정된 기준관세율은 2024년 1월 1일에 유효한 각 당사국의 최혜국 실행관세율, 2024년 1월 1일에 유효한 한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상의 자국의 특혜 관세율, 그리고 2024년 1월 1일에 유효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이라 한다)상의 자국의 특혜 관세율 중 가장 낮은 것을 반영한다.

3. 품목에 대한 각 관세 인하 단계에서의 과도적인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관세율 및 단계별 양허유형은 그 품목에 대하여 각 당사국의 양허표에 표시된다. 품목에 대한 각 관세 인하 단계에서, RCEP상의 과도적인 관세율이 더 낮은 경우, 그 과도적인 관세율이 적용된다.

4. 과도적인 양허 단계별 관세율은 최소한 백분율의 가장 근접한 소수 첫째 자리까지 되도록 그 아래는 버리거나, 관세율이 통화단위로 표시되는 경우, 한국의 경우 최소한 가장 근접한 한국 원 단위로 표시되도록,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경우 최소한 가장 근접한 말레이시아 링깃 단위로 표시되도록 그 아래는 버린다.

5. 각 당사국의 품목은 한국의 경우 204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말레이시아의 경우 204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RCEP상의 특혜 관세율보다 덜 자유화되지 않는다.

6. 이 부속서 및 그에 포함된 당사국 양허표의 목적상, **이행 1년차**란 제19.6조(발효)에 규정된 대로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를 말한다.

7. 이 부속서 및 그에 포함된 당사국 양허표의 목적상, **이행 2년차**를 시작으로, 매년 단계별 관세인하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국 관세 양허표 일반 주해

이 부속서는 2024년 1월 1일에 발효 중인 한국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K)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이 양허표의 규정에 대한 해석은 HSK의 일반 주해, 부 주해 및 류 주해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 양허표의 규정이 이에 상응하는 HSK 규정과 일치하는 범위에서,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이에 상응하는 HSK 규정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말레이시아 관세 양허표 일반 주해

1. 이 부속서는 2024년 1월 1일에 발효 중인 말레이시아 관세 명령(MCDO)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이 양허표의 규정에 대한 해석은 MCDO의 일반 주해, 부 주해 및 류 주해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 양허표의 규정이 이에 상응하는 MCDO 규정과 일치하는 범위에서,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이에 상응하는 MCDO 규정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2. 부속서 2-가의 제1항에 열거된 단계별 양허유형에 추가하여, 이 양허표는 단계별 양허유형 HSL A와 HSL B를 포함한다.

가. 단계별 양허유형 “HSL A”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그 품목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8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10%로 인하된다. 그리고

나. 단계별 양허유형 “HSL B”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그 품목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2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10%로 인하된다.

3. 가.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철강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1) 원산지 상품이 철강 서비스 센터를 포함한 제조자에 의하여 직접 수입 및 사용되고, 규격, 등급 및 수량에 대하여 그러한 원산지 상품의 사용자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이 말레이시아에서 생산되지 않아야 한다.

주: 이 주의 목적상, “제조자” 라는 용어는 말레이시아의 「1975년 산업조정법」(법률 제156호) 및 그 개정에 따라 제조자로 정의된 실체를 말한다.

- 2) 원산지 상품이 허가된 제조 창고로 지정된 사용자를 위하여 또는 자유지역 내로 수입되어야 한다. 또는
- 3) 원산지 상품이 말레이시아가 도입한 그 밖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나. 위의 면제는 말레이시아 법상 적용 가능한 절차에 따라 부여된다. 원산지 상품은 관세 면제에 대하여, 비당사국으로부터의 철강 동종 상품의 수입에 부여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는다.

다.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양 당사국은 이 주와 관련된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협의한다. 어느 한쪽 당사국은 사용자, 생산자 및 그 밖의 관련 기관의 대표를 협의에 초청할 수 있다.